Understanding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.

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①

Ⅰ.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

중대재해처벌법은 당초 가습기 살균제 피해,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, 태 안화력발전소 사고인 김용균씨 사망사고 및 산업재해 사망자 매년 2,000 여명 발생 등으로 안전조치(의무)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별도로 2020년 1월 26일 '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(이하 중대재해처벌법)'이 제정, 공포되어 상시 근로자 50명이상 사업(사업장)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(2022년1월 27일)부터, 상시 근로자 5~50명 미만 사업(사업장)은 공포 후 3년이 경과된 날(2024년 1월 27일)부터 시행된다.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준비 중이다.

11.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약

제1장 총칙

중대재해= 중대산업재해 + 중대시민재해 ▶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 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가.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.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다.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▶ 중대시민재해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	제1조 (목적)	사업 또는 사업장,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 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·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하다.
		 ▶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 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가.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.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다.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▶ 중대시민재해



산업안전지도사/기계안전 기술사/건설기계기술사 중부재해예방(주) 전문위원

Special Contribution

발생한 재해로 각목에 해당하는 재해

- 가.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- 나.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
- 다.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
- ▶사업주: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(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)

제2조

- (용어의 정의) ▶경영책임자 등 :
 - 1.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
 - 2.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공기업의 장 등

▶종사자

- 1.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
- 2. 도급, 용역,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
- 3. 수급인과 수급인과 1., 2.의 관계에 있는 자

제2장 중대산업재해

제3조	▶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주(경영책임자)
(적용범위)	(상시근로자 5명 이하 미만 제외)
	▶사업주는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
제4조	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
(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	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보건확보 의무)	2.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	3.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
	4. 안전·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제5조	▶ 사업주(경영책 임자 등)가 제3자에게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4조의 조치 의무
(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	(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, 장비,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
보건확보 의무)	에 한정)
제6조	①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하여 사망 발생 시 : 1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.
(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)	②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발생 시 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.
제7조	▶경영책임자 등이 제6조 해당하는 위반 행위 시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기관에 벌금
**	① 제6조 제1항의 경우(사망): 50억원 이하의 벌금
(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)	② 제6조 제2항의 경우(부상·질병): 10억원 이하의 벌금
제8조	▶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
(안전보건교육의 수강)	※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: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제3장 중대시민재해(제9조~제11조 참조) 제4장 보칙(제12조~제16조 참조)

부칙

제1조	▶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(2022년 1월 27일 시행)
	※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, 사업장 :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(2024년 1월 27일)

Ⅲ. 신업인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

법안명	산업안전보건법(산안법)	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(중대재해처벌법)
적용 범위	전 사업장	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(사업장) (5명 미만 제외)
	중대재해 : 산업재해 중	중대산업재해 :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
	– 사망자1명 이상	- 사망자 1명 이상
중대재해기준	- 3개월 이상 요양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	-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
	-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	-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
		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
 처벌대상	행위책임자 중심	−사업주 : 개인사업자
시절대경		−경영책임자 등 : 법인의 대표이사
		-중앙행정기관장, 지방자치단체장은 포함(현업공무원은 제외)
	사업주	실질적으로 지배 · 운영 · 관리하는 사업장
	제38조(안전조치)	1. 필요인력·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수립 및 이행조치
 아전조치 의무	제39조(보건조치)	2. 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
[전인포시 리포	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673개 조문)	3.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관한 조치
	에서 구체적으로 규정	4. 안전·보건 관계법령상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		※ 1,4의 세부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위임
	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(벌칙)	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
사망 시 처벌	사망 :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	사망 :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(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)
	안전·보건조치위반 :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	부상 · 질병 :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	법인(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)	법인
양벌규정	사망 : 10억 원 이하의 벌금	사망 : 50억 원 이하 벌금
(법인)	안전·보건조치위반 : 5천만원 이하 벌금	부상, 질병 : 10억 원 이하 벌금
		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 배상책임(징벌적 손해배상)
		공포 1년 후 시행(50인 이상)(2022년1월27일)
시행시기	1981년부터 시행 중	5~ 50인 미만 3년 유예(2024년 1월 27일)
		건설업 : 50억 미만 3년 유예(2024년 1월 27일)

IV. 사업장의 대응방안

중대재해처벌법의 공포 및 시행(2022년 1월 27일)으로 사업장에서 혼란이 예상되지만 이 법은 단순히 사업주(경영책입자)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·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늘려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 및 사업장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및 공포되었다고 생각한다.

따라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사업장의 안전, 보건상의 유해,

위험 방지 조치를 현행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반으로 철저하게 안전 · 보건 조치 및 관리를 하는 것이며, 향후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, 제5조의 안전, 보건상의 유해 ·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다.

향후 사업장의 발전을 위해 산업안전으로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하는데 노, 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. ₪

